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. 5. 13 선고 2021가단459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평

담당변호사 김민수

변 론 종 결 2022. 4. 22.

판 결 선 고 2022. 5. 13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, 이하 ‘원고’라고 한다) 및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76. 10. 16. 접수 제280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
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 및 인접 부동산 등에 대하여 이 법원 2016가단43846호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평택시 C 토지, D 내지 E 토지, F 토지 등은 피고의 단독 소유로,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선정자들 및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피고는 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법원 2019가단59989호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선정자들의 공유로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 :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2, 을 제1 내지 제2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

가. 당사자들의 주장

원고와 선정자들은,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선정자들의 공유로 분할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명의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,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등기의무자,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(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)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(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5다47105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법원 2016가단43846

공유물분할 사건의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등기절차를 이행하였는바, 그렇다면,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여전히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,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유지분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,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, 즉 등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,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지현

별지